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34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제220203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주거권 규정 강화(안 제2조)	3
나. 적정주거기준 도입(안 제17조 등)	6
다. 주거약자 지원 확대(안 제11조제3항 및 제16조)	12

I.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제220203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7. 19.

다. 회 부 일 : 2024. 7.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UN 사회권 규약’은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소득수준 하위 20%의 저소득층 주거비는 연간 소득의 19%에 달하여 가계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주거기본법」상의 주거권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한정되어 정의되어 있으며,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거기본법」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빈약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맞춘 주거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의미하는 기본권 차원의 주거권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주거기본법 제2조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를 추가하여 국민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적정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도록 하며,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을 ‘적정주거기준’ 설정으로 개정하고, 제11조제3항의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

3. 검토의견

가. 주거권 규정 강화(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u>사회적 위험</u> 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u>갖는다</u> .	제2조(주거권) ----- ----- <u>사회적·경제적 위험</u> ----- ----- ----- <u>가지며</u>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u> <u>하여야 한다</u>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권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경제적 위험”을 추가하여 주거권이 사회적 배려 차원을 넘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주거권 규정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국민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문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됨.

한편, 「교육기본법」¹⁾, 「문화기본법」²⁾, 「보건의료기본법」³⁾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무’를 각각 분리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1)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국토교통부는 경제적 위험이 주거권이 미치는 영향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 제3조에서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나. 적정주거기준 도입(안 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17조에 따른 <u>최저주거기준</u>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9. 10. (생략) ② ~ ⑧ (생략)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적정주거기준</u>----- ----- ----- 9. 10.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7조에 따른 <u>최저주거기준</u>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 7. (생략) ② ~ ⑦ (생략)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 ----- ----- ----- -----. 1. -----<u>적정주거기준</u>----- ----- -----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u>최저주거기준</u>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u>최소한의</u>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u>최저주거기준</u>을 설정·공고하여야	제17조(<u>적정주거기준</u>의 설정) ① --- ----- ----- <u>적정한</u>----- <u>적정주거기준</u>-----

현행	개정안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u>최저주거기준</u>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u>최저주거기준</u>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u>최저주거기준</u>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8조(<u>최저주거기준</u>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최저주거기준</u>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u>최저주거기준</u>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u>최저주거기준</u>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	--. ② ----- <u>적정주거기준</u>----- ----- ----- -----, -----<u>적정주거기준</u>----- -----. ③ <u>적정주거기준</u>----- ----- ----- ----- ----- -----. 제18조(<u>적정주거기준</u>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 -----<u>적정주거기준</u>----- ----- -----, -----. ② ----- ----- -----<u>적정주거기준</u>----- ----- -----. ③ ----- ----- ----- ----- -----<u>적정주거기준</u>----- -----

현행	개정안
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최저주거기준</u>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 ----- -----. ④ ----- -----<u>적정주거기준</u>----- ----- ----- ----- -----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따라 설정·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은 제17조에 따른 적정주거기준이 최초로 설정·공고될 때까지는 제17조에 따른 적정주거기준으로 봄	

현행법상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⁵⁾를 통해 정하고 있음.

최저주거기준은 주거정책 수립·시행 및 주택 건설 인·허가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활용됨(법 제18조)⁶⁾.

5) 「최저주거기준((구)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표 1] 현행 최저주거기준((구)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¹⁾	실(방) 구성 ²⁾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교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자료: 「최저주거기준」 [별표]

개정안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여 보다 현실적인 주거기준에 입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6)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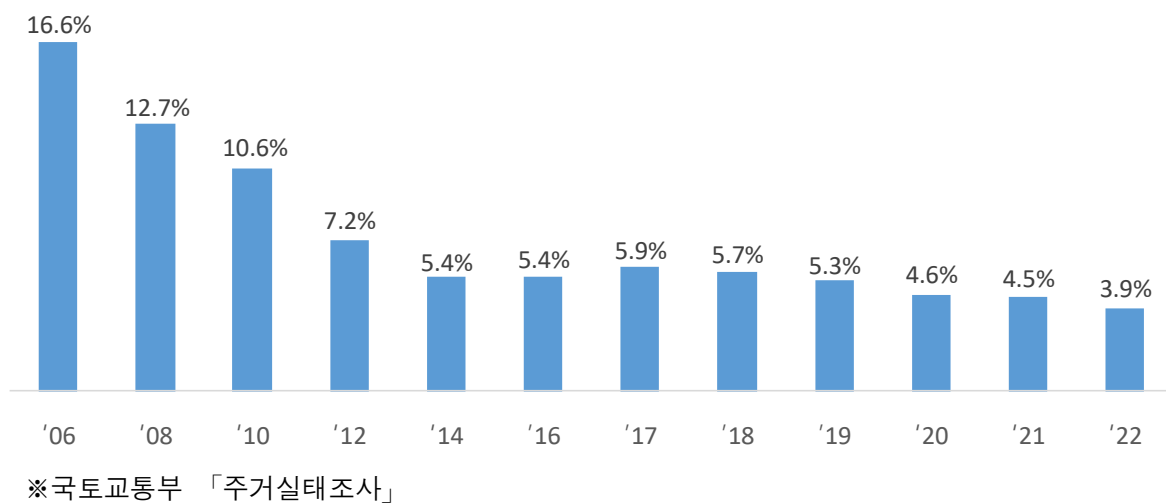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개정·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⁷⁾.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최초로 조사한 2006년도(16.6%)에 비하여 2022년도(3.9%)에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비율이 1/4 이하 수준으로 개선되었지만, 최저주거기준이 개정 없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으므로 개선된 수치만큼 실제로 국민의 주거환경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그림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면 주택 정책의 최저 기준선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이 변화한 가구 구성⁸⁾⁹⁾에 대한 대응성을 갖추고, 경제 수준의 향

7) 【최저주거기준 관련 제21대국회 개정안 발의 이력】

-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08724)
- 최저주거기준 현실화(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1418)
-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 및 부부와 자녀 중심의 전통적 표준가구 모델 수정 등(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484)

상 등을 고려하여 현행의 협소한 면적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임.

국토교통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현행법에 ‘유도주거기준’을 별도로 규정¹⁰⁾하고 있으며, ‘적정’은 “알맞고 바른 정도”의 평균적 수준을 의미하는 용어로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의 유도주거기준과 유사하므로,

최저주거기준은 “떨어져서는 안되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의 지표로 현재 용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 2019년 기준 1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30.2%로 가장 높은 비율(1인 가구 30.2%, 2인 가구 27.8%, 3인 가구 20.7%, 4인 가구 16.2%)을 차지(「인구총조사」(통계청, 2020))

9)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비친족가구)의 수는 2015년 214,421가구(1.1%)에서 2019년 386,968가구(1.9%)로 증가(「인구총조사」(통계청, 2020))

10) 「주거기본법」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유도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주거약자 지원 확대(안 제11조제3항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u>지원할 수 있다.</u> ④ (생략)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u>고령자</u>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u><신설></u>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지원하여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 -----<u>고령자·지원대상아동 등</u>----- ----- -----. 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u> ③ <u>제1항 및 제2항</u>-----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비영리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현행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안 제11조제3항),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에 장애인·고령자 외 ‘지원대상아동’¹¹⁾을 명시하며(안 제16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안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각 개별법(「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지원¹²⁾에 필요한 예산이 변동되므로 현행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안 제16조제1항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3조¹³⁾에서 주거지원필

1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법인의 임대주택 사업 지원을 위해 ‘특화형 매입임대’를 공모를 통해 공급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사업비 용자를 지원하고 있음(국토교통부 설명).

13)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

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을 명시하고 있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며,

안 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법’) 제17조14)에 따라 ‘주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주거기본법」에 별도로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한편, 안 제16조제1항과 관련하여, 현행 「주거기본법」 제16조는 주거약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거약자법에서 따로 정하도록 규정¹⁵⁾하고 있고, 현행 주거약자법¹⁶⁾ 및 동법 시행령¹⁷⁾은 주거약자

·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1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주거기본법」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법률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

16)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인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를 ①65세 이상인 사람, ②장애인, ③국가유공자, ④보훈대상자, ⑤5·18 민주화운동부상자, ⑥고엽제후유의증환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아동’을 「주거기본법」에서 주거약자로 추가함으로써 향후 주거약자법 개정을 전제로 지원대상아동이 주거약자법령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지원대상아동 외에도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대상과의 형평성, 지원대상아동에게 주거약자법을 적용할 경우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74

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